

천연벌꿀, 사양벌꿀과 구분 판매실시

식약청, 벌꿀자율표시제 시범운영 소비자 불신 해소 및 벌꿀 판매 촉진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지난 7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순수벌꿀과 사양벌꿀을 구분 판매하는 자율표시제도를 8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율표시제란 사양벌꿀, 또는 이를 혼합한 꿀은 제품명 및 식품유형에 사양벌꿀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순수벌꿀과 사양벌꿀의 혼합제품인 경우 혼합비율과 함께 탄소동위원소 분석결과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참고자료 1)

식약청은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와 벌꿀의 자율 표시제에 대한 협의를 거쳐 주요 벌꿀 생산단체인 한국양봉협회, 한국토봉협회 등과 함께 전전한 ‘벌꿀 생산·유통을 위한 자율표시제’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식약청은 2008년 국내 양봉농가 36,200가구가 생산한 34,448톤 가운데 사양벌꿀 생산량은 전체 벌꿀 생산량의 28.2%인 9,714톤이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사양벌꿀이 순수벌꿀로 둔갑 유통됨에 따른 소비자 불신을 해소하고 사양벌꿀

과 천연벌꿀을 구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식약청은 향후 자율표시기준(참고자료 2)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위반업체가 있을 경우 업체명 및 제품명을 공개함으로써 벌꿀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양봉협회는 탄소동위원소비는 타 국가에는 없는 검사법으로 천연꿀과 사양벌꿀을 100% 구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사탕무 등) 있으나 국내에서 천연꿀과 사양벌꿀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벌꿀 자율표시제 운영’이 벌꿀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양봉현장에서는 크게 부족한 밀원과, 특정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아까시 나무 70%)에 따른 무밀기 사양, 양봉산물(로얄제리, 프로폴리스, 봉독 등) 생산을 위한 꿀벌 사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에도 국내에서는 이 과정에서 생산된 ‘사양벌꿀’이 인위로 제조된 가짜벌꿀로

오인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소비자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협회는 ‘벌꿀 자율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식약청과 함께 주기적으로 벌꿀을 수거해 검사하고 표시가 미흡한 제품에 한해 언론에 발표하여 빠른 시일 안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양봉**

〈참고자료 1〉 사양벌꿀 자율표시기준

- 꽃꿀과 사양꿀의 구분을 위한 탄소동위원소비율 기준은 -23.5%(다만, 잡화꿀은 -22.0%)로 한다.
- 제품명의 활자크기는 22포인트 이상으로 하며 제품명과 동일한 크기로 “사양벌꿀”임을 반드시 표시하고 그 정의를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사양벌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꿀
- 사양벌꿀 또는 이를 함유한 벌꿀은 식품유형을 “벌꿀(사양벌꿀)”로 표시하고 꽂 꿀의 경우는 “벌꿀”로만 표시한다. 이 경우 활자크기는 14포인트 이상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 사양벌꿀 또는 이를 함유한 벌꿀은 각각의 함량을 표시하고 탄소동위원소비율(%)을 반드시 표시한다.

〈참고자료 2〉 사양벌꿀 자율표시기준

